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77 발의연월일: 2021. 4. 28.

발 의 자: 주철현・양정숙・조오섭

이해식 • 박찬대 • 신정훈

김승남 • 위성곤 • 윤영덕

양향자 • 서삼석 • 최종윤

소병훈 • 이병훈 • 송갑석

우워식 · 김워이 · 민형배

어기구 · 이용빈 · 이개호

김영진 · 이낙연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 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위 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을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를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 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는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 부동산 등을 보조,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재단이 제4조제3항"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4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박람회 사후활용에 해양관광, 해양수산업, 연안 및 해양환경 등 관계자 5인 이상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승인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재단 이사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경우에는 박람회"를 "경우에는 해양박람회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업무의 이관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 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하는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해 업무이관위원회(이하 "이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이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전라남도 도지사, 여수시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위원은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되는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까지 재단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담한다.
-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제1 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의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여수항만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

- 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 승·기념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제4조(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승·기념) ① 「항만공사법」 제 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 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 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띾회 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 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설립한다. 등을 수행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삭 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8. -----박람회 개최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계승·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 <삭 제> 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 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 <삭 제> 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 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 <삭 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 2. 제4조제3항의 사업에서 얻어 진 수입금

<삭 제>

제5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 | 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부동산 등을 보조,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 ② 재단은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 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재단의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방자치단체는 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 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 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 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 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u>재단이 제4조제3항</u>의 사업(수 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u>재단은</u>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 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 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한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치	H 권	등의	매입	의무	면제)
	여수광	방양현	항만공	사가	제4	l조제2
	항					
				-		
제) 여=	수광양
·	항만공					
			<u>-</u> 			
	_			•		
	<u><삭</u>	<u> 412</u>	-			

제3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 승·기념

성과를 계승·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 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 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 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삭 제>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 치·운영) 재단은 박람회의 개최 치·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4조(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위원회) 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박람 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에 따른 박람회 시설 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 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⑥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한다.

-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 1.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박람회 사후활용에 해양관

 광, 해양수산업, 연안 및 해양

 환경 등 관계자 5인 이상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 명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 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승인요청을 받은 해양수산 부장관은 제14조에 규정된 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u>제14조</u>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특구"라 한다)를 지정·고시한다.

②·③ (생 략)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u>재단</u>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u>재단은</u>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⑤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①제14조의2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u>여수</u>
광양항만공사는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u>.</u>

1. ~ 4. (생 략)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u>재</u> 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 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
성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에는</u>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
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
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u>재단은</u> 설립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 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 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 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u>여</u>
<u>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u>
제21조(조세의 감면)
<u>경우에는</u>
해양박람회특구 내의 부지 및
<u> 박람회 시설, 박람회</u>
<u></u>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u>여수광</u>
<u>양항만공사는</u>
<u>제4장</u> 보칙
<u><삭 제></u>

법」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 본다.